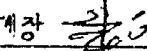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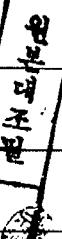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정 30312- 556		기 안 용 지 (전화: 923-8579)	시행상 특별회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구 청 장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86. 10.			
보 조 기 관	부 청장 	협 조 기 관	문 서 통 제 1986. 10. 15 통계과	
기 관 부 기 관	시정비국장 			
기안책임자	제장 	발 신 명 의	 1986. 10. 10 공무증명부	
경 우 수 신 참 조	과 안 참 조		 1986. 10. 10 공무증명부	
제 목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986. 10. 10 공무증명부

(제 1 약)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건



1. 시설 30312-556 (86. 10. 2.)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 720 (86. 10. 2.) 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된 등대본구 청량리동 203-283번지 일대에 대하여 당해 토

지를 지형도상에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코자

3.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9조 및 제 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시작 승인 고시코자 합니다.

1986. 10. 10. 10. 10. 10.

아 래

구분	동	법	번호	면적	연장	시	점	비고
기정	종로	7	7	20 ㎡	520 ㎡	성량리동 203-283	성량리동 205-55	
변경	"	"	"	"	"	"	"	선행변경 (L=240m)

따로 들임 1. 고시문 1부

2. 승인도면 1부

끝.

(제 2 안)

수신 건설부 장관 (참조 : 도시계획 과장)

발신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참조 : 시설계획과장)

발신 : 동대문구청장

제목 같은건 보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20(186, 10. 2.)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도로) 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량리동 203-283번지 일대에 대하여

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하였기 보고합니다.

따로붙임 : 1. 고시문 사본 1부.

2. 지적승인 도면 사본 1부.

발신 : 서울특별시장

수신 총무처 장관

1292

참조 : 법무 담당과

제목 : 관보 개재의뢰

1. 다음과 같이 관보 개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개재 구분 :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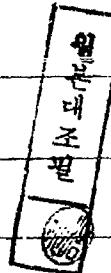
나. 제재명 : 도시계획 시설 (도로)지적승인

다. 법적 근거 :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 6조

파로불일 : 고시안 1부.

쪽.



(제 6 안)

발신 : 구청장

참조 : 시민과장

제목 : 고시번호 부여 및 관인 날인과 발송의뢰

1. 우리구 철량리동 203-283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및 고시되어 보고코자 파로불일 서류에 고시번호 부여와 관인날인

및 발송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로불일 : 관보 개재 의뢰서 1부.

(제 5 안)

수신 : 수신처 착조

발신 : 구청장

제목 : 같은건 통보

1. 관내 청량리등의 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 지적승인되었기 통보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파로불암: 고시안 1부. 끝.

수신처 : 토목과, 수도공사과, 재무과, 건설관리과.

(제 6 안)

수신 : 종로구 새종로 82-1 문화재관리국장

발신 : 구경장

착조 : 재산 관리과장

제목 : 도시계획 시설(도로)

1. 우의구 관내 청량리등 203-283번지부터 같은곳 205-55번지 까지의

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법정과 같이 되었기 통보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파로불암: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 7 안)

2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720(86.10.2)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도로) 경정된 서울특별시 등대문구 청량리동 203-28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항을 지형도상에 명시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

령 제9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등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6. 10.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 제1안 아래사항 이기시행 -

나. 승인도면: 따로 복임: (상략)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20 (86. 10. 2)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3-28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항을 지형도상에 명시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 및 제 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그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6 . 10 .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쪽면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기점	중로	1	7	20m	520m	청량리203-283	청량리205-55	
변경	"	"	"	"	"	"	"	선형변경 L=240m

1. 승인도면 : 주로불일(상관)

충남 은주 경량리동 (도로)

S : 1/1200

B = 20 M

L = 24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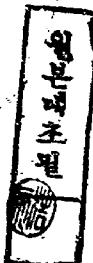
지적(임야) 도 대조풀

도시정비과 직영사업자에게서보

지적 2계 성명 이 풍

확인년월일 1986.10.18.

본 도면은 복사하여 사용할수 있다



사본

별 레

기준 저축선

변경 저축선

분류기호 문서번호	치수012100-	기안용지 (전화: 362-3817)	사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지장	결재 1986.10.20
수신처 보존기간		10.20	
시행일자	'86.	시장	
보조기판	부시장 상하수국장 치수과장	협조기판	문서통제
기안책임자	용지책장 박기원	법무담당관 실사관	1825
경유 수신 창조	각안 참조	발신명의	총인 고시일 10월 20일
제목	하천점용료 (선박의 운항) 징수지역등급 결정 및 고시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건			
1.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준칙 (건설부운령 제662호)과 서울특별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조례 제1958호)에 선박의 운항에 대한 하천점용료 징수 지역등급을 우리시가 별도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2. 한강내에서의 선박운항에 대한 하천점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역등급을 결정하고 별지 고시안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 점용료 등 산정기준 구분			